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2016. 10. 28)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4일(금)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8일(화)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제16조 제5항, 제3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6조제2항, 제106조2, 제108조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2조)

-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방법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위촉사항 신설
-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

나. 위원의 위촉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으로 개정 (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 및 신설 (안 제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변경
-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신설
- 계약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 대상을 신설

라.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운영 규정 삭제(안 제5조)

마.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및 신설(안 제11조)

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공원공사를 신설(안 제12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기 조정(안 제5조 ~ 제15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6.1.15.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자문 기능을 삭제하는 등 계약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2014.5.28.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인 회계 관계공무원의 용어를 “경리관”=> “재무관”으로 변경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민간위원중에서 호선

나. **안 제3조**(임무 및 임기)에서는 위원회 위촉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다. **안 제4조**(기능)에서는 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 및 신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 계약규모와 상관없이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명백히 구분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음

라. **안 제11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조문 내용을 변경하였고,

마. **안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한액인 10억원을 삭제하였고, 공원 공사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신설하였음

2. 2016.11.30.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 **안 제4조**(기능)- 입찰공고 전 물품·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3. 2014.5.23. 상위법에서 제명이 변경되어

가.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된 법 명칭으로 변경함

- 검토의견으로 동(同) 조례안은 2016.9.13.~10.3.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동 조례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2016.1.15.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106조의2 등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2014.5.28. 「지방재정법」 제91조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종전 ‘경리관’)이 당연 직으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장을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권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인 관련 협회 등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위원의 구체화된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였음
- 또한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건설진흥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토결과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으며, 이번 조례개정은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당해=> 해당으로, 자=> 사람으로, 부의하다=> 회의에 부치다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の方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16.11.30.] 제3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9.29., 타법개정]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

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11호, 2016.3.29., 타법개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91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91조